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522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함진규 · 정태옥 · 한선교
경대수 · 박찬우 · 성일종
강효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6조에서 “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.”로 규정되어 있으나, 「기술개발촉진법」은 현재 폐지되었고, 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로 변경되었음.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따라서 「기술개발촉진법」을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16조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7조제1항제2호의”를 “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